

2.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<지특법36조의3>'20.8.12.신설>

◆전용면적 60㎡이하, 6억원(수도권) 이하 공동주택 (아파트제외), 도시형생활주택	취득세 100% 면제(한도 300만원)
◆취득가액 6억원(수도권) 이하 다가구(건축물대장 호 수별 전용면적 구분 기재, 전용 60㎡이하 호수 한정)	
◆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호외 주택	취득세 100% 면제(한도 200만원)

* 혼인여부, 연령과 무관(단 미성년제외, 만19세미만), 소득제한 없음, 면적제한 없음. 유상거래(경매 포함)만 인정하고 부담부증여는 제외 (※외국인 감면안됨.)

농특세 - 상가나 85㎡이상의 주택은 감면세액의 20%

생애최초 주택취득 주징요건

-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(전입신고 필요)
※ 전·월세,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
-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
- ③ 실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·증여, 다른 용도(임대)로 사용하는 경우

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요건

1.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

(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)

★ 취득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취득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처분한 경우는 감면 제외

2.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(부담부증여 제외)

2. 주택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함

주택의 범위-단독주택, 아파트, 다세대, 연립 등 공동주택(주택법2조1호)

취득대상이 오피스텔 제외, 분양권제외, 무허가주택도 소유한 것으로 보지않음

☆생애최초감면 증빙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감면신청서 주택취득상세내역서

★경정청구서 경정청구서/환급청구서/통장사본+신분증사본

★증과규정(지방세법 제13조의2세율) 적용하지 않음